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5. 27 선고 2020가단2061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53061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5. 27 선고 2020가단206153 판결

전 문

원 고 울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림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은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영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9. 3. 1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1) 등기와 2019. 3. 19.

접수 제163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3.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보증금액 76,500,000원, 보증기한 2018. 3. 13.로(이후 보증기한은 2020. 3. 13.까지 연장) 각 정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가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3. 13. E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9,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9. 9. 9. 이자연체의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20. 2. 10. 소외 회사의 E의 대출금채무 중 원금 76,500,000원, 이자 1,472,473원 합계 77,972,473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자이자 위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C는 2019. 3.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19. 3. 19. 접수 제1639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2020. 2. 10. 소외 회사의 E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 변제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면서 이를 연대보증한 C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위 연대보증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9. 3. 19.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위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소외회사는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급기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9. 9. 9.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가 2020. 2. 10.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C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이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연대보증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연대보증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연대보증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및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2019. 8.경부터 금융기관의 채무를 연체하였던 것이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소외 회사로부터 월 2,4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에게 대한 채무 외에도 1,012,7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 소유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및 부산 기장군 F 전 96㎡ 전부를 2019. 3. 19.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증여 이후 곧바로 소외 회사에게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수익자의 악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참조).

피고는 자신의 아버지인 C가 앞에서 본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가족회의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게 된 것으로, 당시까지 경제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C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은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정호

별지

부동산 목록

1. <토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 225㎡

2. <건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부산광역시 기장군

블록조 스테이지형 단층 주택 및 팜

69㎡

블록조 스테이지형 단층 축사 및 퇴비사

32.8㎡

1) 청구취지 기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는 오기로 보임